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관련한 세법

### I. 개 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는 각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산학협력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외부의 기업과 제휴하여 다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로부터 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분율만큼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를 절차별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 II. 기술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의 세무문제

### 1. 산학협력단의 세무문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주식 내지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현물출자하는 기술인 특허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법인을 설립한 이후 새로운 기술을 현물로 출자하여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III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 등으로서 그 기술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로 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술 등을 현물출자함에 있어서는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한 기술에 관한 조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생략

⑤ 생략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③ 생략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을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2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와 사업양도】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재화를 현물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1 【현물출자재화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재화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상법 제2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는 때이며,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때를 말한다.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 부가가치세의 감면을 건의

-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는 경우 당해 기술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할 것임
- 건의의 이유  
산학협력 단이 부가가치세를 기술지주회사에 전가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기술지주회사가 이를 전액 공제 내지는 환급을 받게 되는 바, 기술지주회사는 실제 부가가치세를 산학협력단에 지불할 능력이 없음 - 이는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이 기술만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기 때문임

## ②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산학협력 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동일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7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일정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예고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관련규정 및 세제개편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에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③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이하 생략

□ 2007년 세제개편안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개정 건의 불필요

대학기술의 산업화·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5% 초과 출자에 대한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예고하고 있다.

## 2. 기술지주회사의 세무문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는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등록세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록세와 특허권 등의 이전을 위한 등록세로 구분되어 진다.

이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Ⅰ 법인 설립을 위한 등록세

#### □ 지방세법 제137조 【법인 등기의 세율】

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23,000원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달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 ② 이하 생략

## ② 기술의 이전을 위한 등록세

### □ 지방세법 제145조 【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 ·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매 1건당 9,000원

### □ 등록세의 감면을 건의

□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그 실체는 공익법인과 동일하고 회사의 이익을 전액 학교의 교육 등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기 때문임

### III. 자회사 설립과정에서의 세무문제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보유하던 기술 등을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외부기업의 현금출자와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등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문제와 현물출자하는 기술 등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문제등과 같은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①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산학협력단이 현물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 ② 법인세 과세문제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기술 등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양도로서 회계상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술지주회사는 기술 등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등의 취득가액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현물로 출자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당시의 가액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되며, 기술 등의 양도가액은 기술 등을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할 당시의 평가액<sup>■</sup>이 되므로 그 차액은 자산의 처분이익 내지는 처분손실이 되는 것이다.

▣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술 등의 평가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는 달리 상업화를 주도할 외부의 기업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분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 법인세 과세유예를 건의

- 형식상으로는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이 발생하지만 실제 현금의 유입이 전혀 없으므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사실상 법인세를 납부할 수가 없음
- 이후 자회사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까지 압축기장총당금의 손금산입을 통하여 법인세의 과세를 유예하여야 할 것임

## IV.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기술 등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이익금의 배당을 받게 될 것이며,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로부터 이익금의 배당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 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③ 생략

#### □ 법인세법 제18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해당 자회사로부터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 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 다.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

### 당금액

2.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급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되거나 법인세가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산학협력단의 경우

### □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당해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② 제1항은 제18조의 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건의사항**

-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
- 기술지주회사의 전문인력 등에 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할 것
- 자회사 출자에 대한 기술의 평가를 외부의 기업과 협의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의 개정이 필요